제1820호

2021. 6. 24.(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61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21-10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고 시

· 제2021-12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
· 제2021-123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테니스 강습 신설 및 이용 요금 결정고시 ····· 6
· 제2021-124호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7

공 고

· 제2021-10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 취소 공고 ·····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53-2021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0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나. 조 제목을 “수수료 등의 납부”로 개정(안 제3조)
다.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사용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02-2670-3207, 팩스: 02-2670-3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 “(수수료 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다른 조례”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①---------- ---------- 다른 조례 ----------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2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21-1(영등포동7가) 외 5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135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21-1 (영등포동7가)	20210624	신규부여	20100617	국회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08길 25 (도림동)	20210624	신규부여	20100527	도림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정아하우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6길 28 (양평동1가)	20210624	신규부여	20100527	선유서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71-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3길 24-7 (당산동)	20210624	신규부여	20100617	국회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리코하이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6-16, 196-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5-5 (신길동)	20210624	신규부여	20100527	도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나르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 (당산동4가)	20210624	신규부여	20100527	선유로의 동쪽에 위치한 도로	서울영등포 우체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23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테니스 강습 신설 및 이용 요금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3]에 의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테니스 강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결정고시 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제 목: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테니스 강습 이용료 결정고시
□ 시 행 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내 용

연번	프로그램(요일)	대상	횟수(월)	강습시간(분)	이용료(원)	비고
1	1:1개인강습(평일)	성인	12	20	150,000	할인적용 불가
2	1:1개인강습(평일)		8	20	120,000	
3	1:1개인강습(주말)		6	30	200,000	

□ 이용문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공여가팀(☎ 2센터 2630-2988)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2670-35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24호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2-84호(2012.8.30.)로 사업시행인가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28호(2016.4.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7-22호(2017.3.1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7-108호(2017.11.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9-92호(2019.6.2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20-164호(2020.09.0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 칭: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240-16번지 일대
  2) 면 적: 74,091.1㎡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조재석
  2)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45 강남빌딩 3층
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 2021. 06. 22.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계	지 상	지 하		
9,009.63	209,892.65	132,053.24	77,839.41	17.41	255.35

2) 건축시설

구 분		연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대지면적(㎡)
합 계		209,892.65				51,714.59
공동주택	분양	178,279.07	11	지하4층/지상29층	1,210	43,687.04
	임대	27,315.95	3	지하4층/지상21층	266	6,842.71
	소계	205,595.03	14		1,476	50,529.76
상가	소계	4,297.62		지하1~2층		1,184.83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구역면적(합계)		74,091.1	10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19,918.6	27.41	
	도 로	4,095.6	5.53	무상귀속
	공 원	13,910.6	19.3	
	녹 지	1,912.4	1.74	
	공공공지	624	0.84	
택 지 (획 지)	소 계	54,172.5	72.59	
	공동주택	51,714.6	69.8	
	종교시설	2,068.3	2.79	

4) 권리자별 관리처분

대상자	분 양				청산·수용·협의매수
	소계	공동주택	주택 및 상가	상가	
678	416	394	5	17	262

5)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 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계	39㎡	42㎡	49㎡	59㎡			84㎡		114㎡
					A형	B형	C형	A형	B형	
계	1,476	124	73	121	549	139	22	338	86	24
토지등 소유자	503		4	8	354	8		115	2	12
조류시설	5		2			2		1		
일반분양	702		59	6	190	129		223	83	12
임 대	266	124	8	107	5		22			

※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02-2670-417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03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 취소 공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일부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 취소 사유 및 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되고 상인회가 해지된 일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여
○ 영등포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항
○ 지정취소 대상
- 영등포기계상가(양평동1가 247)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시 장 명	소 재 지	비 고
영등포기계상가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 (선유서로24길 6)	전통시장 등록취소(2021.3.19.)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2021.5.31.)

○ 지정취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범위: [붙임1] 참조
○ 일부 지정취소에 따른 영등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범위: [붙임2]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기간: 2021. 6. 24. ~ 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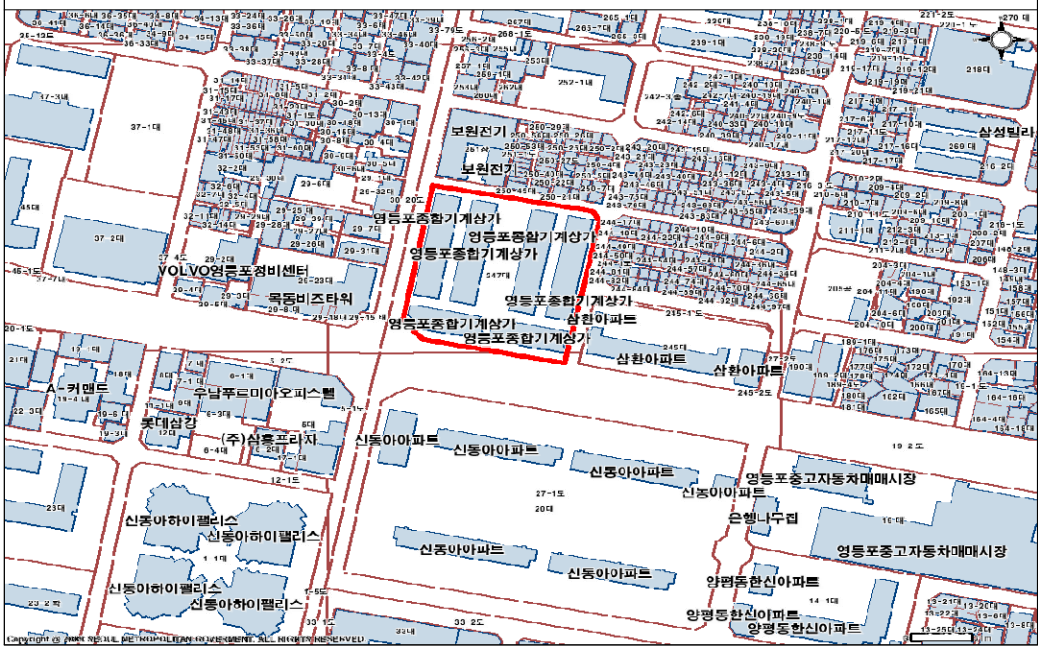
마. 관련도서의 열람장소 및 방법: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열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별관 1층 ☎02-2670-3420】

붙임 1. 지정취소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 범위 1부.
2. 영등포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전체 위치 · 범위 1부. 끝.

지정취소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

※ 아래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영등포기계상가 (선유서로24길 6)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 및 범위

2021. 5월 기준

※ 아래 전통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연번	전통시장명	소 재 지	비 고
1	영신상가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일대	
2	삼구시장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9번지 일대	
3	동남상가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4번지	
4	영등포유통상가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번지	
5	도림시장	영등포구 도림동 176번지 일대	
6	영일시장	영등포구 문래동3가 10번지	
7	대신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8	신동시장	영등포구 신길동 259-4번지 일대	
9	대림중앙시장	영등포구 대림동 1075-47번지 일대	
10	남구로시장	구로구 구로동 289-7 일대	구로구
11	구로시장	구로구 구로동 733-5 일대	구로구
12	신림중앙시장	관악구 조원로 16길 4	관악구
13	꽹귄시장	관악구 남부순환로143나길 7	관악구
14	관악신사시장	관악구 난곡로74길 58	관악구